


특허청

희망의 새시대
**튼튼한 지식재산 생태계,
기업성장 전인**



 남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

www.kipo.go.k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문 의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과 장 목성호 서기관 엄기훈	042-481-5056
	2015년 5월 14일(목) 조간 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 는 5월 13일(수)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상표브로커, 특허 허위표시 꼼짝 마!

- 특허청 ‘상표브로커, 특허 허위표시 등 비정상적 특허·상표 관행 개선’, 정부 100대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선정 -

-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정부핵심 과제에 특허청 소관 ‘상표브로커, 특허 허위표시 등 비정상적 특허·상표 관행 개선’ 과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 ☐ 이에 따라 특허청은 타인의 상표를 먼저 등록하여 선의의 상표 사용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표브로커 행위, 거절된 특허를 등록받은 것으로 표기하여 소비자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특허 허위표시 등 우리 주변의 비정상적 특허·상표 사용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 ☐ 최근 한류 열풍을 타고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증가할수록 해외 상표 브로커의 상표선점 등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중국 상해의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에 따르면, 한 중국

업체가 국내기업의 상표 125개를 대량으로 선출원하여 영세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좌절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처럼 선의의 상표 사용자를 노리는 상표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비단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고 중국 등 해외까지 넓어지면서, 해외 상표브로커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또한,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및 신문·잡지에서 허위 특허표시를 이용한 불법 광고 사례가 늘고 있다. 가령, ‘특허등록 ○○호’로 표시하고 은근슬쩍 출원번호를 기재하거나, 출원 후 거절되었으나 특허등록이 된 것처럼 표시하는 등 다양한 허위표시 유형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러한 특허 허위표시는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의 품질을 오인·혼동하도록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 특허청은 이러한 상황을 과제에 반영하여, 기존의 ‘상표브로커 근절’ 과제에 ‘해외 상표브로커로부터의 피해 예방’, ‘비정상적 특허 표시 관행 바로잡기’를 포함시켜 과제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여 올해 부터 추진키로 했다.

□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공공연하게 나타나는 비정상적 특허·상표 관행을 근절하여 국민들이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정상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특허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식재산권 관련 비정상적 관행 및 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특허행정 제도개선 제안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 특허행정 제도개선 제안공모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특허행정 제도개선 제안공모 중 '비정상의 정상화' 부문에 접수된 제안은 향후 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비정상의 정상화 특허청 자체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 대표과제 상표브로커, 특허 허위표시 등 비정상적 특허·상표 관행 개선

[붙임] 대표과제 상표브로커, 특허 허위표시 등 비정상적 특허·상표 관행 개선

② 대표과제 상표브로커, 특허 허위표시 등 비정상적 특허·상표 관행 개선

(담당 : 상표심사정책과)
(담당 : 산업재산보호지원과)
(담당 :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과제 목표

비정상 관행
특허·상표 관련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인한 산업재산 생태계 위협
- 상표브로커 행위 기승
- 중국 등 해외상표브로커로 인한 국내기업 피해 발생
- 특허 허위표시로 인한 오인 혼동

정상화
비정상적 관행 개선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 보호 및 올바른 사용질서 확립
- 선의의 상표사용자 피해방지
- 해외상표브로커 대응체계 구축에 의한 우리기업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 올바른 특허표시제도 정착

과제 선정사유

상표법상 선등록주의의 허점을 악용해 국내·외 미등록 상표를 선점하여 부당한 이익을 꾀하려는 상표브로커 행위*가 기승
* 외국 유명상표, TV 프로그램 제명(1박2일), 연예인 명칭 등을 모방출원해 등록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 영세상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상표권 남용

중국 등에서 우리 기업 상표를 대량으로 무단선점하고 로열티를 요구하는 등 상표브로커로 인한 현지진출기업 피해 증가

온라인 쇼핑몰, 신문 잡지, 전단지 등의 매체에서 잘못된 사실을 기반으로 광고하는 특허 허위표시 다수 발생

* 출원중인 제품을 등록받은 것처럼 표시하거나, 거절된 것을 특허받은 것으로 표시하는 등의 다양한 허위표시 유형이 존재

● 정상화 방안

- ▶ **상표브로커 실태파악 및 상표 등록방지를 통한 부당이익 차단**
 - 언론, 민원, 심사 등 종합적 모니터링 통해 상표브로커 리스트 업데이트
 - 상표브로커 출원현황 관리, 이들의 출원에 대해 인터넷 검색 등 심사관 직권조사 강화하여 상표브로커의 모방상표 등록 방지
- ▶ **상표브로커의 상표권 남용방지를 위한 상표제도 개선**
 - 캐릭터, 연예방송관련 명칭 등 무단으로 상표등록 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 동의 없이 상표 사용 불가능, 정당한 권리자가 상표권 취소 가능
 - 사용하지 않는 등록상표에 대해 “누구든지” 취소청구 할 수 있도록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 확대
 - 상표를 선점할 목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출원한 상표, 저명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상표에 대한 등록 방지 규정 신설
- ▶ **상당, 홍보 등을 통한 피해 예방 및 지식재산 존중 문화 확산**
 - 상표브로커 피해신고사이트 개설 및 운영, 피해사례 전파 및 상담 지원
 - 피해 유형 및 대응 방법 소개 등 상표브로커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실시
- ▶ **해외 상표브로커 현황파악 및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 지원**
 - 기업피해사례 수집*,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한 해외 현지 상표브로커 현황 조사 및 피해가 많은 중국 상표브로커 일제 조사 실시
 - * 상표선점피해가 많은 5개 산업단체(의류·화장품·식품·전자·프랜차이즈협회)
 - IP-DESK를 통해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출원상표 미의신청 및 등록상표 취소 등 해외상표브로커 대응 컨설팅 지원
- ▶ **허위표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행정조치 강화**
 - 올바른 특허 표시를 위한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및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출원중인 경우에는 “특허출원(심사중)+출원번호”로 표시하도록 규정
 - 특허출원 표시예: 특허출원(심사중) 제10-2015-0012345호
 - 올바른 특허표시 및 광고 요령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제시하는 특허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 특허 허위표시에 대한 행정 조치
 - 허위 표시의 경중에 따른 행정지도 및 고발조치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대응

● 추진계획 및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상표브로커 출원관리 및 피해상담	상시	관리 대상 상표브로커 40명(15.9월 누계 기준) 상표브로커 신규출원 274건(15.9월) 부정목적 상표출원 거절건수 1,458건(15.9월)	
피해신고사이트 모바일 시스템 구축	2분기	피해신고사이트 모바일 시스템 구축 완료	6월
업종별 간담회 개최	4분기	업종별 간담회 개최(7회)	10월
기업 피해사례 수집,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을 통한 피해예방(계속)	상시	상표 무단 先 등록 및 상표 분쟁예방 등 K-브랜드 관련 피해 사례 접수 및 상담(15.9월말 기준 311건) - 컨퍼런스, 전시회 등 직접 찾아가는 이동식 부스 운영 및 상담 19건(15.1~9월말)	
중국 상표브로커 일제조사	2분기	IP-DESK 미출원 상표 135건 일제조사 실시	5월
허위표시 현황·추이 모니터링	상시	특허 허위표시 실태 조사 실시	7월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4분기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7월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4분기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한 용역 진행(5월 ~)	

● 기대효과

- ▶ 상표브로커에 대한 상표등록 거절 확대로 잠재적 사회적 비용* 절감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예방
- * 상표브로커가 등록상표를 통해 요구하는 라이선스 비용 등
- ** 부정목적을 근거로 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이의신청 건수 감소
- ▶ 해외상표브로커에 대한 기업 사전정보제공 강화 및 대응 컨설팅 지원을 통한 우리기업 상표 해외 경쟁력 강화
- ▶ 올바른 특허표시 문화 정착을 통해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